

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[2004. 12. 10]

조례 제124호
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 264호
일부개정 2023. 4. 12 조례 제107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군 역사에 뜻 깊은 날을 증평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증평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,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증평군민의 화합을 통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4. 12>

제2조(증평군민의 날) 증평군민의 날(이하 “군민의 날”이라 한다)은 매년 8월 30일로 한다. <개정 2023. 4. 12>

[제목개정 2023. 4. 12]

제3조(기념행사)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4. 12>

제4조(추진위원회 구성) ① 군민의 날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증평군민의 날 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4. 12>

②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,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 4. 12>

③ 군수, 군의회 의장,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, 민간 공동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신설 2023. 4. 12>

④ 위원은 각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<신설 2023. 4. 12>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행사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세부규정) 군민의 날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3. 4. 12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

부칙(2007. 11. 23 조례 제26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4. 12 조례 제107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